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3.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84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양미영)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내 제안제도 근거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중 공무원 제안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이관하여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행정절차법」으로 변경하여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 제안 참여 자격을 강남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안 제3조)
- 공무원 제안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함(안 제3조제5호·제6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4.28. ~ 2023.5.18.)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안 제1조(목적)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삭제하고,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¹⁾로 대체하려는 것임.
- 현재, 국민 제안제도와 관련한 상위 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의 제1조(목적)도 관련 근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두고 있으며, 비한자어 세대를 위해 ‘고안(考案)’이라는 용어에 한자 ‘考案’을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현재 복합민원처리 관련 사항으로 본 조례와 연관이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78조²⁾는 지방공무원 제안

1) 「행정절차법」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행정청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11.]

2)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도와 관련된 근거 규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이기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적용범위)는 강남구 제안제도에 관한 일반효력을 기대하는 규정으로 강남구 내에서 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령”을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 및 지방자치법 상 법령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단계에 위치하기에 기존 조례와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조례는 수평관계에 있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 안 제2조의 (적용범위)라는 제목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할 것임.

□ 안 제3조(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려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 강남구민만이 아닌 강남구에서 업무나 영업을 하는 등 강남구에 관심이 높은 타지자체 주소지 주민들까지 그 제안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이끌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강남구 공무원들의 제안은 별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수렴하여 제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안 제3조 제1호를 신설하여 “구민 등”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로 새롭게 정의하였음.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를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도 반영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구민제안”을 같은 맥락에서 “구민 등의 제안”이라고 하지 않고 간략하게 “제안”으로 정비하였음.
- 공무원 제안과 관련된 사항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는 “<삭제>” 상태로 유지하고, 그 내용을 규칙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이외에 본 조례 개정안 내용 중 “<삭제>” 표기로 개정 연혁을 남겨두는 조문들은 안 제3조 제2호와 제3호 그리고 안 제4조 중 제2항임.
 - 일부개정안 제출부서인 기획예산과가 해당 조례 <삭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과의 연계를 위해 그 연혁을 입법경제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우리나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은 흡수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바, 자치법규의 조문에서도 개정연혁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일부개정조례로 인하여 조항 번호가 달라지면 일부개정조례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개정 연혁을 나타낼 필요성 및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조항에서 삭제되는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없고, 개정연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삭제된 조항 자리에 삭제되지 않는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법제처, 2022 : 394)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강남구민 이외의 강남구와 관련 있거나 관심이 높은 타지자체 주민들까지 의견수렴에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제안의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 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 184호

제안일자 : 2023.6.13.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조문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제안 에 관하여는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조례- ----- ----- -----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안과 동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가. 제안제도의 근거 법령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로 변경됨을 반영

나. 공무원 제안 관련 사항을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에 제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함으로써,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분리 운영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에 따라 공무원 제안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이행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행정절차법」으로 변경하여 근거 법령을 변경(안 제1조)

나. 제안 참여 자격을 강남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안 제3조)

다. 공무원 제안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안 제3조제5호·제6호, 제4조제②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3)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04.28.~2023.05.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을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으로, “고안”을 “고안(考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2조 중 “법령”을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구민 등”으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민과 공무원”을 “구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구민과 공무원”을 “구민 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구민제안”을 “제안”으로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 ----- ----- 고안(考案) ----- ----- ----- ----- ----- ----- ----- ----- ----- -----.</p> <p>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조례----- ----- ----- ----- -----.</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p>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 행정서비스 ·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 마. (생략)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

람 누구나를 말한다.

2. ----- 구민 등-----

-----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

-----.

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나.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구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인사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창안의 실시 소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창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

-----.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안-----

-----.
-----.

<삭 제>

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제19조(상여금 지급) 제안의 채택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또는 구세·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삭 제>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삭 제>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가. 제안제도의 근거 법령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로 변경됨을 반영

나. 공무원 제안 관련 사항을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에 제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함으로써, 구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분리 운영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에 따라 공무원 제안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이행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행정절차법」으로 변경하여 근거 법령을 변경(안 제1조)

나. 제안 참여 자격을 강남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안 제3조)

다. 공무원 제안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

칙」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안 제3조제5호·제6호, 제4조제②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3)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04.28.~2023.05.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을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으로, “고안”을 “고안(考案)”으로 한다.

제2조 중 “법령”을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구민 등”으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민과 공무원”을 “구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구민과 공무원”을 “구민 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구민제안”을 “제안”으로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 ----- ----- 고안(考案) ----- ----- ----- ----- ----- ----- ----- ----- -----.</p> <p>제2조(적용범위) ----- --- 조례----- ----- -----.</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p>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 마. (생략)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

2. ----- 구민 등-----

-----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

-----.

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나.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 7. (생략)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 구민 등-----

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구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인사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창안의 실시 소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창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

-----.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안-----

-----.

<삭 제>

이 금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
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
여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
보

제19조(상여금 지급) 제안의 채택
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또는 구세·세외수입 증대
를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
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
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삭 제>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
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
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
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
의 순으로 지급한다.

<삭 제>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삭 제>

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